



의안번호	제 2017 - 10 호
보 고 연 월 일	2017. 4. 10. (제7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사건 접수 ..... 1
- 2. 처리 현황 ..... 18

## I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 1. 전문위원 개임 ..... 42
-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45

## I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46

## IV. 자문위원 연임 위촉

- 1. 개요 ..... 47
- 2. 진행경과 ..... 47
- 3. 자문위원 명단 ..... 48

## V. 2017년도 양형위원회 제8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 1. 개요 ..... 49
  - 2. 참석 현황 ..... 49
  - 3. 회의 내용 ..... 49
  - 4. 자문의견 요약 ..... 49
-

##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 공청회 개요 ..... 53
-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53

## VII. 양형기준안 및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 54
- 2.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 56

## VIII.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 기준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81
- 2. 관련 규정 ..... 81
- 3. 공개 방법 ..... 82
- 4. 추진 일정 ..... 82

## IX.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83
-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87

별지 ..... 신임전문위원 프로필

---

#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사건 접수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6. 12.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1	6
	강도살인	92	29	121
	강도살인미수	28	2	30
	살인	1,898	234	2,132
	살인교사	6	2	8
	살인미수	2,558	356	2,91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47	9	56
	유사강간살인	1	0	1
	존속살해	191	33	224
	존속살해미수	101	13	114
	특가법(보복살인등)	2	1	3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b>전체</b>	<b>4,931</b>	<b>681</b>	<b>5,612</b>
뇌물범죄	뇌물공여	3,314	415	3,729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5	0	5
	뇌물공여의사표시	37	19	56
	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	1	1
	뇌물수수	2,341	228	2,569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9	1	10
	부정처사후수뢰	115	17	132
	수뢰후부정처사	118	8	126
	제3자뇌물교부	184	29	213
	제3자뇌물취득	206	23	229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특가법(뇌물)	783	89	872
	특가법(뇌물)교사	1	0	1
	<b>전체</b>	<b>7,117</b>	<b>830</b>	<b>7,947</b>
성범죄	강간	1,687	397	2,084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978	69	1,047
	강간치사	7	1	8
	강간치상	1,586	127	1,713
	강도강간	92	6	98
	강제추행	14,209	3,877	18,086
	강제추행상해	229	23	252
	강제추행치상	681	64	745
	미성년자의제강간	133	27	16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2	1	1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49	13	16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4	0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	7	20
	상습강제추행	21	4	25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76	12	78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81	2	18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8	2	21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0	1	20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3	44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420	8	42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51	4	15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5	9	20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21	0	2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8	4	62
	성폭력범죄(특수강간등)	515	2	517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67	6	373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등)	126	0	12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97	43	1,04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133	284	1,417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39	18	5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66	57	22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58	21	7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64	2	6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32	11	4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3	2	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588	70	658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571	39	61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등)	253	43	29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426	132	55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13	62	27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70	26	9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53	15	6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63	48	61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37	21	5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12	4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11	3	1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97	7	10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1	3	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유사강간등)	2	1	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간등)	1	3	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16	3	1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287	74	1,36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84	68	15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등)	14	11	2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등)	34	29	6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69	50	11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4	6	1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388	67	45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508	119	62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교사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62	11	7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13	24	13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등)	1,365	134	1,49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62	31	39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15	3	1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유사강간등)	3	5	8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240	45	28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등)	679	125	80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57	11	6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431	206	3,63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38	9	4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58	21	7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272	588	2,86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04	85	38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37	79	3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35	32	16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64	10	7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21	1	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01	60	46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69	39	10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10	21	31
	유사강간	212	118	330
	유사강간상해	17	10	27
	유사강간치상	32	8	40
	준강간	1,076	287	1,363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7	0	7
	준강간치상	100	14	114
	준강제추행	2,078	591	2,669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21	3	24
	준유사강간	112	55	167
	준유사강간상해	1	0	1
	준유사강간치상	3	3	6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등)	1	0	1
	<b>전체</b>	<b>44,929</b>	<b>8,640</b>	<b>53,569</b>
강도범죄	강도	807	64	871
	강도교사	2	1	3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3,548	290	3,838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3	1	24
	강도치상	290	25	315
	상습특수강도	1	0	1
	준강도	482	67	549
	준강도교사	1	0	1
	준특수강도	72	9	81
	특가법(강도)	42	6	4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9	4	73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3,028	265	3,293
	<b>전체</b>	<b>8,437</b>	<b>732</b>	<b>9,169</b>
횡령·배임 범죄	배임	2,968	363	3,331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3,813	595	4,408
	업무상배임교사	1	3	4
	업무상횡령	15,651	2,179	17,830
	업무상횡령교사	1	1	2
	특경가법(배임)	1,773	153	1,926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2,525	237	2,762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4,430	2,099	16,529
	횡령교사	2	1	3
	<b>전체</b>	<b>41,167</b>	<b>5,631</b>	<b>46,798</b>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6	4	10
	모해위증	106	16	122
	모해위증교사	4	1	5
	위증	7,496	1,106	8,602
	위증교사	1,020	161	1,181
	<b>전체</b>	<b>8,632</b>	<b>1,288</b>	<b>9,920</b>
무고범죄	무고	10,522	1,394	11,916
	무고교사	68	23	91
	특가법(무고)	37	1	38
	특가법(무고)교사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전체	10,628	1,418	12,046
총 계		125,841	19,220	145,061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약취·유인·인 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7	2	9
	간음유인	21	3	24
	국외이송유인	1	0	1
	미성년자약취	65	19	84
	미성년자유인	42	12	54
	성매매약취	15	5	20
	성매매유인	7	4	11
	성매매인신매매	2	0	2
	영리약취	9	4	13
	영리유인	52	13	65
	인신매매	1	0	1
	인질강요	1	0	1
	인질상해	0	1	1
	추행유인	4	2	6
	특가법(약취·유인)	27	0	27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9	0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b>전체</b>		<b>314</b>	<b>65</b>
사기범죄	사기	171,957	45,135	217,092
	사기교사	8	1	9
	상습사기	561	154	715
	상습준사기	1	0	1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6	0	6
	준사기	145	56	201
	컴퓨터등사용사기	2,489	573	3,062
	컴퓨터등사용사기교사	0	1	1
	특경가법(사기)	4,372	1,009	5,381
	<b>전체</b>		<b>179,539</b>	<b>46,929</b>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148	20	168
	산림보호법위반	229	51	28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954	198	1,152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2	0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29	11	40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3	0	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26	9	35
	상습절도	214	93	307
	상습특수절도	64	17	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834	978	3,8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6	2	8
	야간방실침입절도	228	77	305
	야간선박침입절도	10	3	13
	야간주거침입절도	1,668	409	2,077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1	2
	절도	30,396	8,246	38,642
	절도교사	83	22	105
	특가법(산림)	170	15	185
	특가법(절도)	9,200	749	9,949
	특수절도	14,798	2,743	17,541
	특수절도교사	44	9	53
	<b>전체</b>	<b>61,107</b>	<b>13,653</b>	<b>74,760</b>
	공문서범죄	공문서변조	440	59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1,515	282	1,797
공문서부정행사교사		11	2	13
공문서위조		1,257	164	1,421
공문서위조교사		8	2	10
공전자기록등변작		2	2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938	435	2,373
공전자기록등위작		76	17	93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85	123	808
변조공문서행사		21	2	2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80	0	8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6	0	36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6	0	6
위조공문서행사		154	13	167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224	28	252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1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2	1	13
	<b>전체</b>	<b>6,471</b>	<b>1,131</b>	<b>7,602</b>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276	52	328
	사도화변조	1	0	1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271	65	336
	사문서변조교사	2	0	2
	사문서부정행사	20	5	25
	사문서위조	6,413	1,493	7,906
	사문서위조교사	23	3	26
	사전자기록등변작	12	1	13
	사전자기록등위작	93	42	135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3	0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6	0	6
	위조사문서행사	361	35	39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36	50	286
	자격모용사문서작성교사	0	1	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2	1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102	1	103
	허위진단서작성	40	3	43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b>전체</b>	<b>7,873</b>	<b>1,753</b>	<b>9,626</b>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8,545	9,063	37,608
	공무집행방해교사	1	1	2
	공용건조물파괴	4	0	4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2,054	367	2,421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42	21	63
	공용서류손상	201	33	234
	공용서류은닉	11	1	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1	5
	위계공무집행방해	1,231	311	1,54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4	1	5
	특수공무집행방해	1,554	382	1,936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0	1	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748	174	922
	특수공용물건손상	39	27	66
	<b>전체</b>	<b>34,446</b>	<b>10,384</b>	<b>44,830</b>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678	124	80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위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590	584	3,17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2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58	9	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045	161	1,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5	11	56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7,166	1,483	8,649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747	286	2,033
	약사법위반교사	2	1	3
	의료법위반	3,317	838	4,155
	의료법위반교사	21	3	24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6	0	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010	312	1,3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100	58	158
	<b>전체</b>	<b>17,816</b>	<b>3,872</b>	<b>21,688</b>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571	633	3,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23	57	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101	4,536	19,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1	1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0	13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156	4	1,160
	특가법(마약)	7	1	8
	특가법(향정)	53	20	7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0	48	4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3	157	170
	<b>전체</b>	<b>19,125</b>	<b>5,470</b>	<b>24,595</b>
<b>총 계</b>	<b>326,691</b>	<b>83,257</b>	<b>409,948</b>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184	346	1,53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01	30	131
	증권거래법위반	99	7	106
	특경가법(수재등)	180	66	246
	특경가법(알선수재)	440	164	604
	특경가법(증재등)	138	55	193
	<b>전체</b>	<b>2,142</b>	<b>668</b>	<b>2,810</b>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74	23	9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국외누설등)	12	0	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256	36	29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	10	21
	상표법위반	2,992	843	3,835
	상표법위반교사	0	1	1
	실용신안법위반	21	2	23
	저작권법위반	2,129	441	2,570
	특허법위반	54	21	75
	<b>전체</b>	<b>5,549</b>	<b>1,377</b>	<b>6,926</b>
폭력범죄	상습상해	11	33	44
	상습존속상해	1	3	4
	상습존속폭행	3	2	5
	상습특수상해	0	11	11
	상습특수폭행	1	3	4
	상습특수협박	1	0	1
	상습폭행	15	67	82
	상습협박	2	12	14
	상해	52,964	15,085	68,049
	상해교사	9	3	12
	상해치사	289	78	367
	존속상해	328	94	422
	존속상해치사	29	10	39
	존속중상해	2	1	3
	존속폭행	105	59	164
	존속폭행치사	7	0	7
	존속폭행치상	6	4	10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존속협박	29	13	42
	중상해	173	59	232
	특가법(보복범죄등)	47	0	47
	특가법(보복상해등)	169	41	210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2	0	2
	특가법(보복폭행등)	149	62	211
	특가법(보복협박등)	352	121	473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786	863	3,649
	특수상해	0	5,054	5,054
	특수상해교사	0	1	1
	특수존속상해	0	26	26
	특수존속폭행	3	10	13
	특수존속협박	9	25	34
	특수중상해	0	7	7
	특수폭행	577	1,590	2,167
	특수폭행치사	1	1	2
	특수폭행치상	8	39	47
	특수협박	790	2,224	3,014
	폭처법(공동상해)	12,853	2,863	15,716
	폭처법(공동상해)교사	6	6	1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21	0	21
	폭처법(공동폭행)	3,634	1,107	4,741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466	108	574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14	7	2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11	4	15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2	0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56	0	5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7	0	1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2	0	12
	폭처법(상습상해)	274	12	286
	폭처법(상습존속상해)	10	0	10
	폭처법(상습존속폭행)	21	1	22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23	0	2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9	0	9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7	0	7
	폭처법(상습특수상해)	0	4	4
	폭처법(상습특수폭행)	0	3	3
	폭처법(상습특수협박)	0	2	2
	폭처법(상습폭행)	260	16	276
	폭처법(상습협박)	51	0	51
	폭처법(야간·공동상해)	32	1	33
	폭처법(야간·공동폭행)	2	0	2
	폭처법(야간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9,240	100	19,340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17	0	1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10	0	110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1	0	2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63	0	6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4,462	2	4,464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787	2	5,789
	폭행	24,320	9,153	33,473
	폭행교사	1	1	2
	폭행치사	241	47	288
	폭행치상	846	365	1,211
	협박	3,329	1,168	4,497
	협박교사	2	0	2
	<b>전체</b>	<b>135,115</b>	<b>40,573</b>	<b>175,688</b>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7,019	6,324	43,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0	1,122	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0	2,978	2,978
	특가법(도주차량)	16,972	2,635	19,607
	특가법(도주차량)교사	5	0	5
	특가법(도주치사)	0	69	69
	특가법(도주치상)	0	1,522	1,522
	특가법(위험운전치사)	0	34	34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0,596	2,315	12,91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특가법(위험운전치상)	0	1,706	1,706
	<b>전체</b>	<b>64,592</b>	<b>18,705</b>	<b>83,297</b>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3,003	1,378	4,381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0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32	4	136
	<b>전체</b>	<b>3,136</b>	<b>1,382</b>	<b>4,518</b>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3,712	1,560	5,272
	지방세기본법위반	20	0	20
	특가법(조세)	179	59	238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624	229	853
	<b>전체</b>	<b>4,535</b>	<b>1,848</b>	<b>6,383</b>
공갈범죄	공갈	1,100	461	1,561
	상습공갈	2	7	9
	특경가법(공갈)	29	14	43
	특수공갈	0	31	31
	폭처법(공동공갈)	1,319	493	1,812
	폭처법(공동공갈)교사	3	0	3
	폭처법(상습공갈)	83	0	8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공갈)	1	0	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2	0	2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68	0	68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b>전체</b>	<b>2,608</b>	<b>1,006</b>	<b>3,614</b>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3	4	17
	공용자동차방화	2	1	3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일반건조물방화	120	30	150
	일반건조물방화교사	1	2	3
	일반물건방화	134	76	210
	일반물건방화교사	1	1	2
	일반자동차방화	77	16	93
	현존건조물방화	49	18	6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0	1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14	8	22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316	105	42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현주건조물방화교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7	5	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40	15	55
	현주선박방화	1	0	1
	<b>전체</b>	<b>779</b>	<b>283</b>	<b>1,062</b>
<b>총 계</b>		<b>218,456</b>	<b>65,842</b>	<b>284,298</b>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 라. 제4기 대상범죄(2014.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583	371	954
	배임증재	361	249	610
	<b>전체</b>	<b>944</b>	<b>620</b>	<b>1,564</b>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770	733	1,503
	전체	770	733	1,503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26	111	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19	11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4,763	3,656	8,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사	0	2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73	66	139
	아동·청소년성보호법(매매)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318	246	56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164	140	304
	<b>전체</b>	<b>5,564</b>	<b>4,232</b>	<b>9,796</b>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감금	91	84	175
	감금치상	42	28	70
	노인복지법위반	15	10	25
	아동복지법위반	222	115	33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0	1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5	17	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4	53	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1	5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84	149	23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4	3	7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1	0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34	58	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	1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2	15	17	
	영아유기	9	15	24	
	영아유기치사	1	1	2	
	유기	2	0	2	
	유기치사	9	4	13	
	존속감금	3	0	3	
	존속유기	1	0	1	
	존속체포치상교사	2	0	2	
	중감금	3	3	6	
	중감금치상	9	11	20	
	청소년보호법위반	1,116	874	1,990	
	체포	2	0	2	
	체포치상	0	2	2	
	특수감금	5	21	26	
	특수감금치상	1	3	4	
	특수존속감금	0	1	1	
	특수중감금	0	6	6	
	특수체포	0	1	1	
	특수체포치상	0	1	1	
	폭처법(공동감금)	141	112	253	
	폭처법(공동감금)교사	0	1	1	
	폭처법(공동존속감금)	4	0	4	
	폭처법(공동체포)	1	2	3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35	1	36	
	학대	1	8	9	
	학대치사	0	1	1	
	<b>전체</b>	<b>1,861</b>	<b>1,607</b>	<b>3,468</b>	
	장물범죄	상습장물알선	1	1	2
		상습장물취득	13	26	39
장물보관		17	38	55	
장물알선		38	50	88	
장물양도		6	4	10	
장물운반		12	37	49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장물취득	226	409	635
	장물취득교사	0	1	1
	특가법(장물)	2	0	2
	<b>전체</b>	<b>315</b>	<b>566</b>	<b>881</b>
권리행사 방해범죄	강요	17	72	89
	강제집행면탈	145	228	373
	권리행사방해	375	757	1,132
	권리행사방해교사	1	1	2
	점유강취	0	1	1
	폭처법(공동강요)	14	34	48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4	0	4
<b>전체</b>	<b>556</b>	<b>1,093</b>	<b>1,649</b>	
업무방해 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20	524	744
	경매방해	72	85	157
	업무방해	2,796	5,906	8,702
	업무방해교사	4	10	14
	입찰방해	66	163	229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2	2	4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0	2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6	38	4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교사	1	1	2
	<b>전체</b>	<b>3,167</b>	<b>6,731</b>	<b>9,898</b>
손괴범죄	문서손괴	14	31	45
	문서손괴교사	0	1	1
	재물손괴	948	2,316	3,264
	재물손괴교사	3	7	10
	재물손괴치상	4	2	6
	전자기록등손괴	2	3	5
	중손괴	0	1	1
	특수재물손괴	66	363	429
	특수재물손괴교사	0	1	1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121	152	273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교사	0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	0	1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4	2	6
	폭처법(상습특수재물손괴등)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52	2	154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b>전체</b>	<b>1,315</b>	<b>2,883</b>	<b>4,198</b>
사행성· 게임물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738	2,273	4,011
	경륜경정법위반	2	8	10
	관광진흥법위반	9	57	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30	144	2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262	641	903
	도박개장	121	114	235
	도박공간개설	62	407	469
	도박장소개설	110	352	4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62	231	393
	한국마사회법위반	111	86	19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15	39	54
		<b>전체</b>	<b>2,722</b>	<b>4,352</b>
<b>총 계</b>		<b>17,214</b>	<b>22,817</b>	<b>40,031</b>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접수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접수건수임

#### 마. 제5기 대상범죄(2016.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6. 7. ~ 2016. 12.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근로기준법위반	2,131	2,1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151	1,151
	선원법위반	8	8
	직업안정법위반	85	85
	최저임금법위반	5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9	19
		<b>전체</b>	<b>3,399</b>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20	120
	<b>전체</b>	<b>120</b>	<b>120</b>
과실치사상 범죄	과실치사	2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52	352
	업무상과실치사	245	245
	업무상과실치상	307	307
	중과실치상	2	2
		<b>전체</b>	<b>908</b>
<b>총 계</b>		<b>4,427</b>	<b>4,427</b>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 2. 처리 현황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6. 12.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6.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5. 12.	살인범죄	수	4,540	3	0	4,543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3,408	2,155	100	5,663
		비율	60.2%	38.1%	1.8%	100.0%
	성범죄	수	25,938	10,785	1,981	38,704
		비율	67.0%	27.9%	5.1%	100.0%
	강도범죄	수	7,535	54	0	7,589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5,478	24,729	6,724	36,931
		비율	14.8%	67.0%	18.2%	100.0%
	위증범죄	수	158	5,912	1,811	7,881
		비율	2.0%	75.0%	23.0%	100.0%
	무고범죄	수	311	6,739	2,221	9,271
		비율	3.4%	72.7%	24.0%	100.0%
	<b>전체</b>	<b>수</b>	<b>47,368</b>	<b>50,377</b>	<b>12,837</b>	<b>110,582</b>
		<b>비율</b>	<b>42.8%</b>	<b>45.6%</b>	<b>11.6%</b>	<b>100.0%</b>
2016. 1. ~ 2016. 12.	살인범죄	수	686	2	0	688
		비율	99.7%	0.3%	0.0%	100.0%
	뇌물범죄	수	470	307	6	783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범죄	비율	60.0%	39.2%	0.8%	100.0%
		수	4,396	3,838	25	8,259
	강도범죄	비율	53.2%	46.5%	0.3%	100.0%
		수	790	5	0	795
	횡령·배임범죄	비율	99.4%	0.6%	0.0%	100.0%
		수	739	4,065	969	5,773
	위증범죄	비율	12.8%	70.4%	16.8%	100.0%
		수	30	928	314	1,272
	무고범죄	비율	2.4%	73.0%	24.7%	100.0%
		수	36	1,047	330	1,413
	전체	비율	2.5%	74.1%	23.4%	100.0%
		수	<b>7,147</b>	<b>10,192</b>	<b>1,644</b>	<b>18,983</b>
		비율	<b>37.6%</b>	<b>53.7%</b>	<b>8.7%</b>	<b>100.0%</b>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6.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5. 12.	약취·유인범죄	수	215	88	1	304
		비율	70.7%	28.9%	0.3%	100.0%
	사기범죄	수	9,563	118,874	29,445	157,882
		비율	6.1%	75.3%	18.7%	100.0%
	절도범죄	수	5,145	42,019	10,201	57,365
		비율	9.0%	73.2%	17.8%	100.0%
	공문서범죄	수	362	3,882	1,404	5,648
		비율	6.4%	68.7%	24.9%	100.0%
	사문서범죄	수	342	5,625	2,450	8,417
		비율	4.1%	66.8%	29.1%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1,462	22,900	8,253	32,615
		비율	4.5%	70.2%	25.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383	5,225	10,462	16,070
		비율	2.4%	32.5%	65.1%	100.0%
	마약범죄	수	2,558	14,697	290	17,545
		비율	14.6%	83.8%	1.7%	100.0%
	전체	수	<b>20,030</b>	<b>213,310</b>	<b>62,506</b>	<b>295,846</b>
		비율	<b>6.8%</b>	<b>72.1%</b>	<b>21.1%</b>	<b>100.0%</b>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6. 1. ~ 2016. 12.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수	49	16	0	65
		비율	75.4%	24.6%	0.0%	100.0%
	사기범죄	수	2,854	36,712	5,797	45,363
		비율	6.3%	80.9%	12.8%	100.0%
	절도범죄	수	803	10,610	1,960	13,373
		비율	6.0%	79.3%	14.7%	100.0%
	공문서범죄	수	59	905	193	1,157
		비율	5.1%	78.2%	16.7%	100.0%
	사문서범죄	수	100	1,588	554	2,242
		비율	4.5%	70.8%	24.7%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437	9,850	494	10,781
		비율	4.1%	91.4%	4.6%	100.0%
	식품·보건범죄	수	192	1,321	1,975	3,488
		비율	5.5%	37.9%	56.6%	100.0%
	마약범죄	수	782	4,589	89	5,460
		비율	14.3%	84.0%	1.6%	100.0%
	<b>전체</b>	<b>수</b>	<b>5,276</b>	<b>65,591</b>	<b>11,062</b>	<b>81,929</b>
		<b>비율</b>	<b>6.4%</b>	<b>80.1%</b>	<b>13.5%</b>	<b>100.0%</b>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6.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5. 12.	증권·금융범죄	수	642	887	120	1,649
		비율	38.9%	53.8%	7.3%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36	1,932	2,998	4,966
		비율	0.7%	38.9%	60.4%	100.0%
	폭력범죄	수	5,704	66,806	52,374	124,884
		비율	4.6%	53.5%	41.9%	100.0%
	교통범죄	수	1,597	42,612	16,629	60,838
		비율	2.6%	70.0%	27.3%	100.0%
	선거범죄	수	3,084	70	0	3,154
		비율	97.8%	2.2%	0.0%	100.0%
	조세범죄	수	847	2,119	769	3,735
		비율	22.7%	56.7%	20.6%	100.0%
	공갈범죄	수	223	1,980	327	2,5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방화범죄	비율	8.8%	78.3%	12.9%	100.0%
		수	786	19	5	810
		비율	97.0%	2.3%	0.6%	100.0%
	전체	수	<b>12,919</b>	<b>116,425</b>	<b>73,222</b>	<b>202,566</b>
		비율	<b>6.4%</b>	<b>57.5%</b>	<b>36.1%</b>	<b>100.0%</b>
2016. 1. ~ 2016. 12.	증권·금융범죄	수	287	265	43	595
		비율	48.2%	44.5%	7.2%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16	659	763	1,438
		비율	1.1%	45.8%	53.1%	100.0%
	폭력범죄	수	1,981	22,692	12,668	37,341
		비율	5.3%	60.8%	33.9%	100.0%
	교통범죄	수	129	14,380	3,548	18,057
		비율	0.7%	79.6%	19.6%	100.0%
	선거범죄	수	1,078	28	0	1,106
		비율	97.5%	2.5%	0.0%	100.0%
	조세범죄	수	464	1,017	259	1,740
		비율	26.7%	58.4%	14.9%	100.0%
	공갈범죄	수	85	802	141	1,028
		비율	8.3%	78.0%	13.7%	100.0%
	방화범죄	수	347	13	0	360
		비율	96.4%	3.6%	0.0%	100.0%
	전체	수	<b>4,387</b>	<b>39,856</b>	<b>17,422</b>	<b>61,665</b>
		비율	<b>7.1%</b>	<b>64.6%</b>	<b>28.3%</b>	<b>100.0%</b>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6.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7. ~ 2015. 12.	배임수증재범죄	수	303	436	44	783
		비율	38.7%	55.7%	5.6%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05	372	47	524
		비율	20.0%	71.0%	9.0%	100.0%
	성매매범죄	수	459	3,591	821	4,871
		비율	9.4%	73.7%	16.9%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수	112	473	930	1,515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6. 1. ~ 2016. 12.	범죄	비율	7.4%	31.2%	61.4%	100.0%
	장물범죄	수	3	101	49	153
		비율	2.0%	66.0%	32.0%	100.0%
	권리행사방해범죄	수	7	118	78	203
		비율	3.4%	58.1%	38.4%	100.0%
	업무방해범죄	수	54	703	876	1,633
		비율	3.3%	43.0%	53.6%	100.0%
	손괴범죄	수	31	281	408	720
		비율	4.3%	39.0%	56.7%	100.0%
	사행성·게임물범죄	수	4	1,118	347	1,469
		비율	0.3%	76.1%	23.6%	100.0%
	<b>전체</b>	<b>수</b>	<b>1,078</b>	<b>7,193</b>	<b>3,600</b>	<b>11,871</b>
		<b>비율</b>	<b>9.1%</b>	<b>60.6%</b>	<b>30.3%</b>	<b>100.0%</b>
	배임수증재범죄	수	304	280	49	633
		비율	48.0%	44.2%	7.7%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05	595	69	769
비율		13.7%	77.4%	9.0%	100.0%	
성매매범죄	수	424	2,926	593	3,943	
	비율	10.8%	74.2%	15.0%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수	161	624	877	1,662	
	비율	9.7%	37.5%	52.8%	100.0%	
장물범죄	수	27	436	116	579	
	비율	4.7%	75.3%	20.0%	100.0%	
권리행사방해범죄	수	26	682	308	1,016	
	비율	2.6%	67.1%	30.3%	100.0%	
업무방해범죄	수	164	3,837	2,807	6,808	
	비율	2.4%	56.4%	41.2%	100.0%	
손괴범죄	수	90	1,476	1,396	2,962	
	비율	3.0%	49.8%	47.1%	100.0%	
사행성·게임물범죄	수	13	3,873	871	4,757	
	비율	0.3%	81.4%	18.3%	100.0%	
<b>전체</b>	<b>수</b>	<b>1,314</b>	<b>14,729</b>	<b>7,086</b>	<b>23,129</b>	
	<b>비율</b>	<b>5.7%</b>	<b>63.7%</b>	<b>30.6%</b>	<b>100.0%</b>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처리건수임.

(5) 제5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6. 7. 1. ~ 2016.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6. 7. ~ 2016. 1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수	11	557	671	1,239
		비율	0.9%	45.0%	54.2%	100.0%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수	1	46	14	61
		비율	1.6%	75.4%	23.0%	100.0%
	과실치사상범죄	수	1	211	108	320
		비율	0.3%	65.9%	33.8%	100.0%
	전체	수	<b>13</b>	<b>814</b>	<b>793</b>	<b>1,620</b>
		비율	<b>0.8%</b>	<b>50.2%</b>	<b>49.0%</b>	<b>100.0%</b>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70	32	102	
	강도살인미수	27	2	29	
	살인	1,751	247	1,998	
	살인교사	5	2	7	
	살인미수	2,363	355	2,718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41	11	5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76	28	204	
	존속살해미수	95	11	106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3	0	3	
	<b>전체</b>		<b>4,543</b>	<b>688</b>	<b>5,231</b>
	뇌물범죄	뇌물공여	2,619	349	2,968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공여약속		2	3	5	
뇌물공여의사표시		19	17	36	
뇌물수수		1,806	241	2,047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뇌물요구	7	3	10
	부정처사후수뢰	88	21	109
	사전뇌물수수	2	0	2
	수뢰후부정처사	110	9	119
	제3자뇌물교부	150	20	170
	제3자뇌물취득	167	22	189
	특가법(뇌물)	689	98	787
	특가법(뇌물)교사	1	0	1
	<b>전체</b>	<b>5,663</b>	<b>783</b>	<b>6,446</b>
성범죄	강간	1,334	373	1,707
	강간미수상해	4	4	8
	강간미수치상	1	1	2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908	84	992
	강간치사	7	1	8
	강간치상	1,429	111	1,540
	강도강간	86	3	89
	강제추행	11,538	3,568	15,106
	강제추행상해	233	26	259
	강제추행치상	645	73	718
	미성년자간음	7	1	8
	미성년자의제강간	114	26	14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1	0	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9	17	12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8	11	19
	미성년자추행	1	0	1
	상습강제추행	15	2	17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89	13	70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5	0	165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69	1	170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등)	2	0	2
	성폭력범죄(장애인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8	3	181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2	43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97	10	40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34	9	14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68	19	18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19	2	2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0	2	42
	성폭력범죄(특수강간등)	386	2	388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48	9	357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등)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09	33	94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033	256	1,28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40	15	5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64	63	22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58	29	8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67	7	7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21	7	2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2	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509	65	57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80	50	530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가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등)	200	38	23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66	116	48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51	5	35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25	57	28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65	21	86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52	11	6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152	37	18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27	20	4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11	7	1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9	3	1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80	4	8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유사강간등)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간등)	1	3	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14	4	18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유사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239	69	1,30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77	58	13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등)	13	10	2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등)	23	21	4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53	50	10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3	4	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332	51	38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99	116	61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교사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55	13	6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23	29	15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등)	1,088	140	1,22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74	23	39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15	5	2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유사강간등)	4	4	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208	54	26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등)	521	126	64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61	7	68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166	158	3,32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31	6	3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46	14	6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061	573	2,63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08	127	435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35	79	31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력등간음)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강간등)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29	42	17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62	15	7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8	2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44	60	5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42	47	8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8	25	33
	유사강간	164	120	284
	유사강간상해	14	13	27
	유사강간치사	1	0	1
	유사강간치상	26	9	35
	준강간	894	284	1,178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6	1	7
	준강간치상	93	16	109
	준강제추행	1,754	587	2,341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9	2	21
	준유사강간	98	66	164
	준유사강간상해	1	1	2
	준유사강간치사	1	0	1
	준유사강간치상	3	4	7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90	0	190
	<b>전체</b>	<b>38,704</b>	<b>8,259</b>	<b>46,963</b>
강도범죄	강도	759	75	834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959	319	3,278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34	1	35
	강도치상	250	24	274
	상습강도	1	0	1
	상습특수강도	1	0	1
	준강도	458	62	520
	준강도교사	0	1	1
	준특수강도	71	9	80
	특가법(강도)	47	4	51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9	4	73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873	296	3,169
	<b>전체</b>	<b>7,589</b>	<b>795</b>	<b>8,384</b>
	횡령·배임 범죄	배임	2,639	399
배임교사		3	0	3
업무상배임		2,982	530	3,512
업무상배임교사		3	0	3
업무상횡령		14,323	2,105	16,428
업무상횡령교사		1	0	1
특경가법(배임)		1,546	157	1,703
특경가법(횡령)		2,440	300	2,740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2,990	2,282	15,272
횡령교사		3	0	3
<b>전체</b>		<b>36,931</b>	<b>5,773</b>	<b>42,704</b>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2	3
	모해위증	102	26	128
	모해위증교사	5	1	6
	위증	6,696	1,087	7,783
	위증교사	1,077	156	1,233
	<b>전체</b>	<b>7,881</b>	<b>1,272</b>	<b>9,153</b>
무고범죄	무고	9,170	1,394	10,564
	무고교사	60	18	78
	특가법(무고)	40	1	41
	특가법(무고)교사	1	0	1
	<b>전체</b>	<b>9,271</b>	<b>1,413</b>	<b>10,684</b>
<b>총 계</b>	<b>110,582</b>	<b>18,983</b>	<b>129,565</b>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7	2	9
	간음유인	18	7	25
	국외이송약취	1	0	1
	미성년자약취	64	11	75
	미성년자유인	43	14	57
	성매매약취	8	3	11
	성매매유인	1	5	6
	성매매인신매매	1	0	1
	약취유인	1	0	1
	영리약취	7	5	12
	영리유인	34	12	46
	인질강요	0	1	1
	인질상해	0	1	1
	추행약취	0	1	1
	추행유인	6	2	8
	특가법(약취·유인)	26	1	27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7	0	87
	<b>전체</b>	<b>304</b>	<b>65</b>	<b>369</b>
	사기범죄	사기	150,535	43,627
사기교사		8	1	9
상습사기		507	164	671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6	0	6
준사기		124	32	156
컴퓨터등사용사기		2,700	615	3,315
특경가법(사기)		4,002	924	4,926
<b>전체</b>		<b>157,882</b>	<b>45,363</b>	<b>203,245</b>
절도범죄	건조물침입절도	0	1	1
	문화재보호법위반	122	27	149
	산림보호법위반	188	40	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831	181	1,0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1	1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4	9	1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4	5	9
	상습절도	26	103	129
	상습특수절도	8	21	29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498	785	3,2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5	2	7
	야간방실침입절도	232	76	308
	야간선박침입절도	7	3	10
	야간주거물침입절도	1	0	1
	야간주거침입절도	1,789	360	2,149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28,245	8,161	36,406
	절도교사	74	13	87
	주거침입절도	1	0	1
	특가법(산림)	138	34	172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8,185	637	8,822
	특수절도	14,961	2,906	17,867
	특수절도교사	41	8	49
	<b>전체</b>	<b>57,365</b>	<b>13,373</b>	<b>70,738</b>
	공문서 범죄	공도화변조	1	0
공문서변조		425	85	510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970	232	1,202
공문서부정행사교사		8	1	9
공문서위조		1,224	222	1,446
공문서위조교사		10	0	10
공전자기록등변작		2	1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950	393	2,3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68	24	92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34	145	779
변조공문서행사		5	2	7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0	4
위조공문서행사		109	15	124
자격모용공문서작성		3	0	3
허위공문서작성		220	36	256
허위공문서작성교사		2	1	3
허위공문서행사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0	2
	<b>전체</b>	<b>5,648</b>	<b>1,157</b>	<b>6,805</b>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31	9	40
	사문서변조	429	112	541
	사문서변조교사	1	1	2
	사문서부정행사	8	5	13
	사문서위조	7,267	1,904	9,171
	사문서위조교사	19	3	22
	사문서위조행사	3	0	3
	사전자기기록등변작	10	2	12
	사전자기기록등위변작	2	0	2
	사전자기기록등위작	92	38	130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3	0	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223	51	27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29	66	295
	자격모용사문서작성교사	0	1	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0	1	1
	허위작성진단서행사	4	1	5
	허위진단서작성	93	47	140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1	3
	<b>전체</b>	<b>8,417</b>	<b>2,242</b>	<b>10,659</b>
공무 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6,527	9,118	35,645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2,210	533	2,743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42	15	57
	공용서류손상	213	35	248
	공용서류은닉	12	0	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3	0	3
	위계공무집행방해	1,163	309	1,47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4	1	5
	특수공무집행방해	1,539	495	2,034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0	2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847	240	1,087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39	32	71
	<b>전체</b>	<b>32,615</b>	<b>10,781</b>	<b>43,396</b>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567	95	66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444	450	2,89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8	1	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59	8	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003	160	1,1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7	14	4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2	0	2
	식품위생법위반	6,463	1,555	8,018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548	220	1,768
	약사법위반교사	1	2	3
	의료법위반	2,901	675	3,576
	의료법위반교사	21	3	24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1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915	274	1,1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92	30	122
	<b>전체</b>	<b>16,070</b>	<b>3,488</b>	<b>19,558</b>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31	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03	67	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4,135	4,773	18,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1	0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0	11	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133	7	1,140
특가법(마약)		5	1	6
특가법(향정)		35	14	4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0	10	1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	170	172
<b>전체</b>		<b>17,545</b>	<b>5,460</b>	<b>23,005</b>
<b>총 계</b>	<b>295,846</b>	<b>81,929</b>	<b>377,775</b>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924	278	1,20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45	24	69
	증권거래법위반	82	12	94
	특경가법(수재등)	132	71	203
	특경가법(알선수재)	362	152	514
	특경가법(증재등)	104	58	162
	<b>전체</b>	<b>1,649</b>	<b>595</b>	<b>2,244</b>
지식재산 권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57	13	7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8	5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	8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18	83	20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보호등)	10	0	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	1	11
	상표법위반	2,823	889	3,712
	실용신안법위반	18	3	21
	저작권법위반	1,869	421	2,290
	특허법위반	49	15	64
	<b>전체</b>	<b>4,966</b>	<b>1,438</b>	<b>6,404</b>
	폭력범죄	상습상해	10	42
상습존속상해		0	2	2
상습존속폭행		4	3	7
상습특수상해		0	3	3
상습특수폭행		0	7	7
상습폭행		13	62	75
상습협박		2	10	12
상해		48,509	14,066	62,575
상해교사		9	4	13
상해치사		288	85	373
존속상해		327	92	419
존속상해치사		27	11	38
존속중상해		3	1	4
존속폭행		93	34	127
존속폭행치사		7	0	7
존속폭행치상		10	4	14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존속협박	21	13	34
	중상해	152	60	212
	특가법(보복범죄등)	173	1	174
	특가법(보복상해등)	154	52	206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3	0	3
	특가법(보복폭행등)	139	72	211
	특가법(보복협박등)	357	163	520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620	768	3,388
	특수상해	0	3,510	3,510
	특수존속상해	0	16	16
	특수존속폭행	3	17	20
	특수존속협박	3	35	38
	특수중상해	0	3	3
	특수폭행	604	1,664	2,268
	특수폭행치상	6	31	37
	특수협박	822	2,356	3,178
	폭처법(공동상해)	12,076	2,900	14,976
	폭처법(공동상해)교사	9	6	15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6	3	19
	폭처법(공동폭행)	3,117	1,020	4,137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417	71	488
	폭처법(공동협박)교사	2	0	2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14	18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4	1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9	1	10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1	0	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36	1	3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3	0	1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1	0	11
	폭처법(상습상해)	263	15	278
	폭처법(상습존속상해)	7	0	7
	폭처법(상습존속폭행)	18	4	2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32	1	3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폭행)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8	0	8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7	0	7
	폭처법(상습특수상해)	0	3	3
	폭처법(상습특수폭행)	0	2	2
	폭처법(상습폭행)	253	19	272
	폭처법(상습협박)	48	2	50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6	0	26
	폭처법(야간·공동폭행)	1	0	1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8,734	555	19,289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11	1	12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30	3	133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9	0	29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85	1	86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4,174	36	4,210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888	55	5,943
	폭처법(특수협박)	1	0	1
	폭행	21,058	7,861	28,919
	폭행교사	3	2	5
	폭행치사	218	51	269
	폭행치상	841	357	1,198
	협박	2,954	1,166	4,120
	협박교사	3	0	3
	<b>전체</b>	<b>124,884</b>	<b>37,341</b>	<b>162,225</b>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4,858	8,403	43,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0	511	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0	1,277	1,277
	특가법(도주차량)	15,853	3,684	19,537
	특가법(도주차량)교사	4	1	5
	특가법(도주치사)	0	27	27
	특가법(도주치상)	0	607	607
	특가법(위험운전치사)	0	17	17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0,123	2,711	12,834
	특가법(위험운전치상)	0	819	819
	<b>전체</b>	<b>60,838</b>	<b>18,057</b>	<b>78,895</b>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3,009	1,104	4,113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0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44	2	146
	<b>전체</b>	<b>3,154</b>	<b>1,106</b>	<b>4,260</b>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3,109	1,410	4,519
	지방세법위반	2	0	2
	특가법(조세)	134	61	195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490	269	759
	<b>전체</b>	<b>3,735</b>	<b>1,740</b>	<b>5,475</b>
공갈범죄	공갈	1,068	498	1,566
	공동공갈	0	1	1
	상습공갈	4	19	23
	특경가법(공갈)	23	6	29
	특수공갈	0	12	12
	폭처법(공동공갈)	1,235	481	1,716
	폭처법(공동공갈)교사	4	0	4
	폭처법(상습공갈)	108	3	11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1	2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86	7	93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b>전체</b>	<b>2,530</b>	<b>1,028</b>	<b>3,558</b>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0	6	16
	공용자동차방화	2	2	4
	공익건조물방화	2	0	2
	방화연소	0	1	1
	산림보호법위반	10	6	16
	일반건조물방화	113	54	167
	일반건조물방화교사	3	2	5
	일반물건방화	123	78	201
	일반물건방화교사	1	0	1
	일반선박방화	0	1	1
	일반선박방화교사	1	0	1
	일반자동차방화	88	25	113
	현존건조물방화	49	25	74
	현존건조물방화치사	4	2	6
	현존건조물방화치상	15	8	23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	1	1	2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340	128	468
	현주건조물방화교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13	3	1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2	17	49
	현주자동차방화	1	0	1
	<b>전체</b>	<b>810</b>	<b>360</b>	<b>1,170</b>
<b>총 계</b>	<b>202,566</b>	<b>61,665</b>	<b>264,231</b>	

-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배임수증 재범죄	배임수재	497	404	901
	배임증재	286	229	515
	<b>전체</b>	<b>783</b>	<b>633</b>	<b>1,416</b>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524	769	1,293
	<b>전체</b>	<b>524</b>	<b>769</b>	<b>1,293</b>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84	113	2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24	22	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4,169	3,362	7,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사	0	2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75	63	1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280	233	51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138	146	284
	청소년성보호법	1	2	3
	<b>전체</b>	<b>4,871</b>	<b>3,943</b>	<b>8,814</b>
체포·감금· 유기·학대 범죄	감금	85	102	187
	감금치상	35	38	73
	노인복지법위반	10	10	20
	아동복지법위반	176	134	31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4	11	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적학대등)	0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3	26	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0	5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54	147	20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1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0	6	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1	0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10	41	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0	4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2	13	15
	아동학대치사	1	0	1
	영아유기	7	14	21
	영아유기치사	1	1	2
	유기	1	2	3
	유기치사	8	3	11
	존속감금	3	0	3
	존속유기	1	0	1
	존속체포치상교사	0	2	2
	존속학대	0	1	1
	중감금	6	6	12
	중감금치상	10	8	18
	청소년보호법위반	925	836	1,761
	체포	3	0	3
	체포치상	1	3	4
	특수감금	0	61	61
	특수감금치상	6	5	11
	특수존속감금		1	1
	특수중감금	0	2	2
	특수중감금치상	0	3	3
	특수체포	0	1	1
	특수체포치상	0	2	2
	폭처법(공동감금)	110	152	262
	폭처법(공동감금)교사	0	1	1
	폭처법(공동존속감금)	0	4	4
	폭처법(공동체포)	1	2	3
	폭처법(상습감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47	3	50
	학대	1	8	9
	학대치사	0	1	1
	학대치상	1	1	2
	<b>전체</b>	<b>1,515</b>	<b>1,662</b>	<b>3,177</b>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장물범죄	상습장물알선	1	0	1
	상습장물취득	0	15	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4	0	14
	장물보관	3	35	38
	장물알선	19	60	79
	장물양도	3	4	7
	장물운반	4	27	31
	장물취득	109	435	544
	장물취득교사	0	1	1
	특가법(장물)	0	2	2
	<b>전체</b>	<b>153</b>	<b>579</b>	<b>732</b>
권리행사 방해범죄	강요	6	77	83
	강제집행면탈	35	218	253
	권리행사방해	151	688	839
	권리행사방해교사	1	1	2
	특수강요	0	2	2
	폭처법(공동강요)	5	30	35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5	0	5
	<b>전체</b>	<b>203</b>	<b>1,016</b>	<b>1,219</b>
업무방해 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50	478	528
	경매방해	12	115	127
	업무방해	1,548	6,037	7,585
	업무방해교사	2	7	9
	입찰방해	20	152	172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0	1	1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0	1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16	1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교사	0	1	1
	<b>전체</b>	<b>1,633</b>	<b>6,808</b>	<b>8,441</b>
손괴범죄	문서손괴	8	24	32
	문서손괴교사	0	1	1
	손괴	0	2	2
	재물손괴	546	2,165	2,711
	재물손괴교사	2	5	7
	재물손괴치상	2	2	4
	전자기록등손괴	1	3	4
	특수공익건조물파괴	0	1	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 2016. 12.	전체
	특수손괴	14	63	77
	특수재물손괴	68	491	559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45	189	234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교사	0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	0	1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6	2	8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	0	1
	폭처법(상습특수재물손괴등)	0	3	3
	폭처법(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25	10	35
	폭처법(특수손괴)	1	0	1
	<b>전체</b>	<b>720</b>	<b>2,962</b>	<b>3,682</b>
사행성·게임물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816	2,264	3,080
	경륜경정법위반	1	5	6
	관광진흥법위반	2	46	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39	122	1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54	270	3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0	261	261
	도박개장	111	203	314
	도박공간개설	115	711	826
	도박장소개설	82	289	3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79	401	580
	한국마사회법위반	70	121	19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0	49	4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0	15	15
	<b>전체</b>	<b>1,469</b>	<b>4,757</b>	<b>6,226</b>
<b>총 계</b>	<b>11,871</b>	<b>23,129</b>	<b>35,000</b>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처리건수임.

### (5) 제5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6. 7. 1. ~ 2016.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6. 07. ~ 2016. 12.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근로기준법위반	625	6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554	554
	선원법위반	3	3
	직업안정법위반	48	48
	최저임금법위반	3	3

범죄군	세부죄명	2016. 07. ~ 2016. 12.	전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6	6
	<b>전체</b>	<b>1,239</b>	<b>1,239</b>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61	61
	<b>전체</b>	<b>61</b>	<b>61</b>
과실치사상 범죄	과실치사	1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32	132
	업무상과실치사	87	87
	업무상과실치상	100	100
	<b>전체</b>	<b>320</b>	<b>320</b>
<b>총 계</b>		<b>1,620</b>	<b>1,620</b>

## I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 1. 전문위원 개임

#### 가. 개요

- 2017. 1. 17.자로 이용 전문위원, 2017. 2. 26.자로 안종열 전문위원, 2017. 2. 11.자로 김현아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2017. 2. 15.자로 김경환 수석전문위원 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5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 다. 위촉 내역

### (1) 신규 위촉

- 전휴재 서울고등법원 판사(2017. 2. 27.자)
- 구민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2017. 2. 27.자)
- 김도연 대검찰청 연구관(2017. 2. 12.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참조

### (2) 수석전문위원 지명

- 정준화 서울고등법원 판사(2017. 2. 27.자)

### (3) 연임 위촉

- 이용 대검찰청 연구관(2017. 1. 18.자)
- 박수정 변호사(2017. 3. 7.자)

라. 전문위원 구성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정준화	제28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6.04.23.
	전휴재	제28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7.02.27.
	구민경	제33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지방법원 판사	17.02.27.
검찰	이용	제2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16.01.18.
	김도연	제34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17.02.12.
변호사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박수정	제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6.03.07.
교수 / 전문가	강수진	제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3.05.16.
	김혜경	해당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5.16.
	노수환	제24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이진국	해당없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1.05.16.
	최준혁	해당없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13.08.20.

## 2. 신입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17. 4. 10.(월) 16:00
- 장 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전휴재, 구민경, 김도연 전문위원

### I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08차	2017. 3. 27.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li> <li>○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li> </ul>

## IV. 자문위원 연임 위촉

###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 2. 진행경과

- 문채규, 윤영미 위원 2017. 1. 6.자로 각 임기만료
- 문채규, 윤영미 위원 2017. 1. 7.자로 각 연임위촉

### 3. 자문위원 명단

분야	성명	생년월일	경력
학계	문채규	59. 02. 0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	52. 10. 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동권	52. 11. 30.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원혜욱	62. 07. 28.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영미	63. 12. 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미영	58. 03. 22.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조벽	56. 11. 14.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홍은희	55. 07. 05.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언론계	김세형	54. 01. 24.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고성국	58. 03. 21.	서경대학교 특임교수(정치평론가)
시민, 사회단체	김자혜	51. 11. 01.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V. 2017년도 양형위원회 제8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 1. 개요

- 일 시: 2017. 3. 13.(월) 16:06 ~ 17:47
- 장 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자문위원 5인(김세형, 김자혜, 손동권, 오미영, 원혜옥)

### 3. 회의 내용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설명
- 자문 의견 청취

### 4. 자문의견 요약

#### 가.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 (가) 쟁점

- “특수도주” 유형(도주 중 제2유형)에서 ‘폭행 또는 손괴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안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

##### (나)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
  - 도주범죄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특수도주범죄의 형이 가중되는 요소를 특별히 추가할 필요는 없음
  - 특수도주 과정에서 상해 이외에도 살인, 방화, 체포, 감금 등의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굳이 상해의 경우만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함

- 현행 안 수정(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특수도주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특수도주죄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도주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특별히 다른 형법상 범죄들과 충돌이 없는 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면 범죄에 대한 사전 규범적 기능을 할 수 있음
  - 상해의 결과가 과실로도 발생함을 고려할 때, 특수도주죄보다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면 법정형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중요소로 인정할 수 있음

## 나.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 (1) 제1안건

#### (가) 쟁점

- '통화 위조·변조' 유형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조와 변조를 구별'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현행 안은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위조와 변조를 구별하지 아니함

#### (나)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위·변조를 구별하지 아니함)
  - 수범자 입장에서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법상 위조와 변조의 법정형이 같으며, 양형실무상 형량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함
  -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규범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행사를 전제하고 있는 변조행위가 위조행위보다 반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음
- 현행 안 수정(위·변조를 구별함)
  - 영향력으로 볼 때, 위조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구별하여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위조·변조의 구성요건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옳은 만큼 양형기준을 나누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 별개 의견
  - 통화 위·변조에 대한 구별 필요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 제2안건

### (가) 쟁점

- '수표부도' 유형에서 '부도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지 여부
- 현행 안은 소유형 분류를 하지 않음. 다만, '수표소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하여 그 적용에서 부도금액 등을 반영

### (나)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부도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하지 않음)
  - 통계상 부도금액과 형기 증가의 대체적인 경향성은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임에도 중한 형이 선고되거나, 다액임에도 경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 피해의 상대성을 고려할 때 부도금액 자체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양형인자(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반영함으로써 부도금액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
- 현행 안 수정(부도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함)
  -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수표 부도의 경우에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도금액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

## 다.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가) 쟁점

-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중 '폭행, 협박 등 행위' 유형을 행위태양(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에 따라 세분해서 **형량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안은 하나의 행위유형으로 분류하고 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하지 아니함

#### (나) 자문의견

- 현행 안 유지(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화할 경우 양형기준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점을 피하기 어려움
- 현행 안 수정(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함)
  - 서민들, 특히 청년들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려 삶의 의지를 꺾는 만큼 행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엄벌이 필요함
  - 형법상 각 해당 범죄 별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 형량의 차이도 적지 아니함[폭행(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협박(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체포·감금(5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등]

### 라.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가) 쟁점

- 최근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위증과 관련하여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구함

#### (나) 자문의견

- 그동안 역사적으로 위증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약했으나, 이번 기회가 법적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위증행위 처벌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국회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규범적 행위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위증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범죄를 고백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 공청회 개요

- 일시: 2017. 2. 6. 14:00~18:00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참석자: 총 5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이규진(상임위원)
  - 전문위원: 정준화, 안종열, 이용, 김현아, 김경환
  - 일반시민, 기자, 변호사, 법원 관계자 등

###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이규진 상임위원
- 발표자: 정준화 전문위원
- 도주·범인은닉범죄, 위증범죄 지정 토론자
  - 홍승희(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중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통화·유가증권범죄 지정 토론자
  - 구길모(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최승재(변호사)
- 대부업법위반범죄 지정 토론자
  -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 연운희(변호사)

## Ⅶ. 양형기준안 및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77차 회의(2017. 1. 4.)에서 의결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지식재산권범죄,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나. 조회 기간

- 2017. 1. 11. ~ 2017. 2. 10.

#### 다. 회신 기관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31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1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6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라. 회신자료**

- 별첨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지식재산권범죄,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관련
  - 특별한 의견 없음
-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세부 설명을 명확히 하자는 견해가 있음

위증죄 양형기준	증거인멸죄 양형기준
<p>다. 위증이 신빙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p> <p>○ 위증으로 인해 <u>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u>,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p>	<p>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p> <p>○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u>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u> 등을 의미한다.</p>

- ▶ 증거인멸죄의 경우 위증과는 달리 '재판절차'가 아닌 '수사단계'의 기소·불기소 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세부 설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현의 수정
- ▶ 위증죄의 '양형인자의 정의' 중 '라. 자수·자백' 부분에서 '공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음

나. 법무부

- 검토배경
  - 17. 1. 대법원 양형위원회,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죄 양형기준 수정안»,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 요청

○ 도주·범인은닉(제정) / 위증 범죄군 양형기준(개정)

▪ **설정대상 및 유형분류**

- (설정대상) 형법상 도주, 특수도주, 도주원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범인은닉, (모해)증거인멸, 증인은닉
- (유형분류) 도주·범인은닉 유형을 도주, 범인은닉·도피로 분류하고, 증거인멸 유형은 위증 범죄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
- ▶ 형법의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을 두루 설정대상에 포함시켰고, 특수도주의 경우 일반 도주와의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유형분류한 것으로 보임

▪ **형량범위**

- 도주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1년↓)	-6월	4월-8월	6월-1년
2	특수도주(7년↓)	-8월	6월-1년6월	1년-4년
3	도주원조(10년↓)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5년

- 범인은닉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범인도피·은닉(3년↓)	-6월	4월-1년	8월-2년

- 증거인멸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증인은닉(5년↓)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10년↓)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 특수도주, 도주원조,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의 경우, 가중구간의 상한

이 법정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 또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경구간의 상한이 가중구간의 하한과 중첩되어 각 영역 구별이 무색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가중구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감경구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이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 특별한 의견 없음

## 다. 대한변호사협회

### ○ 검토의견(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관련)

- 도주범죄 관련하여

- 현행 형법은 제9장에서 도주 및 범인은닉범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으로는 제145조에서 도주·집합명령위반죄를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가중요건으로 ①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 ② 사람을 폭행·협박,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였을 때를 특수도주의 형태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도주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도주원조죄와 간수 등 법령상의 무자가 의무에 위반하여 도주원조를 하였을 경우를 신분범의 형태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구성요건인 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형기준 상 기본구간은 징역 1년을 1/2감경한 징역6월을 기준으로 2개월을 가감한 징역4월부터 징역8월의 형을 기본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일반)감형인자가 존재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특별(일반)가중인자가 존재할 경우는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의 구간은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한 양형구간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도주 과정에 ①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 ② 사람을 폭행·협박,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였을 때를 특수도주의 형태로 가중하였는데 위 특수도주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월부터 징역1년 6월의 구간으로 정하였고, 감경 및 가중 요소의 존부에 따른 감경 및 가중 구간의 설정하였는바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특수도주의 한 형태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위 특수도주조의 구성요건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중요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주범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수도주가 아니라 일반도주죄와 특수폭행(상해)의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중범죄간의 양형기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특수도주죄의 또 다른 구성요건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굳이 경합범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특수도주죄의 또 다른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범인은닉범죄 관련하여**

- 현행 형법은 제151조에서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과 친족 간의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형위원회는 범인은닉죄의 기본처단형을 징역4월부터 징역1년까지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인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징역8월을 기준으로 감경구간은 징역 4월로, 가중구간은 징역 1년
- 아울러 특별(일반)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존부에 따라 감경한 구간은 6월 이하의 징역형에, 가중한 구간은 기본구간을 2배인 8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바, 기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져 있는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징역8월부터 2년까지의 구간으로 설정된 가중 영역은 최고구간에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최종유형분류.

- 따라서 도주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그리고 감경 및 가중인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본구간 및 감경·가중 구간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찬성합니다.
- 다만 범인은닉죄에 있어서는 가중영역에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8월부터 징역 1년 6월로 상한선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검토의견(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현행 형법은 제10장에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 역시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의 경우도 모해목적의 증거인멸을 가중 처벌하되 그 법정형 역시 위증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위증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증거인멸죄와 모해목적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위증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설정하였는바, 우리 형법이 위증과 증거인멸을 같은 장에게 규율하고 있는 점, 보호법의 역시 국가기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모해목적이 부가된 구성요건에 있어서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증죄에 대하여 적용할 양형기준을 증거인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최종유형분류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최종유형분류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대한법무사협회**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귀 위원회의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기획운영과-147, 2017. 1. 11.)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기획운영과-151, 2017. 1. 11.) 관련입니다.
- ▶ 우리협회는 위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도주 및 범인은닉 등 위반 범죄 관련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위증범죄 관련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

### ◆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관련
  - 통화·유가증권 범죄 양형기준 관련해서, 부수법 위반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기죄에서 편취액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듯이, 부수법 위반에서도 부도 또는 부정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중요한 객관적인 양형인자로 보임에도, 그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
  - 위조된 통화 및 유가증권이 사기 등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 가중인자로 지정(또는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설명에 통화·유가증권위조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유가증권 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및 '일부 피해 회복'의 주체 및 상대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 유가증권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에서 처벌불원의 주체 또는 피해회복의 상대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해당 유가증권의 진정한 명의인, 거래의 상대방 등 위조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

## 나. 법무부

### ○ 통화·유가증권 범죄군 양형기준(제정)

- 설정대상 및 유형분류
  - ▶ (설정대상) 형법상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단속법에서의 위변조, 허위신고, 부정수표발행
  - ▶ (유형분류) 위변조와 부정수표발행 등 2가지 유형
- 형량범위
  -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통화 위변조·행사(무기, 2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6년
2	일반 유가증권 등 위변조·행사(10년↓, 7년↓)	-1년	6월-2년	1년-3년
3	수표 위·변조(1년↑)	6월-1년	10월-2년	1년-4년

### - 부정수표발행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허위신고(10년↓)	-1년	6월-2년	1년-4년
2	부정수표발행·작성/ 수표부도(5년↓)	-1년	6월-1년6월	1년-3년

- ▶ 부정수표발행·작성, 수표부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중구간의 상한이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 또한, 모든 유형에서 감경구간의 상한이 가중구간의 하한과 중첩되어 각 영역 구별이 무색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특별한 의견 없음

## 다. 대한변호사협회

### ○ 검토의견

- 현행 형법은 제18장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보면 통화의 위조 등(제207조), 위조통화의 취득(제208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제210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제2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및 예비,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9장에서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위조 등(제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제215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제216조), 위조 유가증권등의 행사 등(제217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제218조), 위조인 지우표등의 취득(제219조), 소인말소(제221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제222조)을 규율하고 역시 미수범 및 예비,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통화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을 보면, 국내통화위조죄의 기본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을 기본 구간으로 하여 감경영역은 징역1년에서 징역 2년 6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07조 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처단형의 구간을 위 법정형에 맞추어 더 높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유가증권의 위조 등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유가증권을 변제한 자의 경우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을 보면 유가증권의 위·변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부터 2년까지를 기본구간으로 정한 후 감경영역은 징역1년 이하로, 가중영역은 징역1년부터 3년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양형기준은 유가증권 위·변조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

다고 사료됩니다.

- 부정수표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신고자의 책임(제4조)에 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징역형 대비 벌금액수가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져 있어서 법정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을 보면 부정수표발행, 작성행위에 대해서는 징역6월과 1년 6월을 기본구간으로 하여 감경영역은 징역 1년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1년부터 3년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죄에 대해서는 징역6월부터 징역2년을 기본영역으로 하여 감경영역은 1년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 1년부터 4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정형을 보면 허위신고죄가 부정수표발행, 작성죄에 비하여 장기형이 2배 높게 정해져 있는 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처단형의 기본영역은 장기형에 있어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으로 커다란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차이를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죄의 처단형의 기본구간 하한선을 징역 6월에서 징역 10월 또는 징역 1년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 최종유형분류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최종유형분류는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통화위·변조죄와 관련하여 기본처단형의 권고영역을 양형위원회가 정한 '징역 1년 6월-징역3년'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2년-징역4년으로 규정하고 위 기본구간을 중심으로 감경 및 가중 영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유가증권의 위·변조죄와 수표의 위·변조죄와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죄와 허위신고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의 처단형의 기본구간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보다 상향조정하여 징역10월-징역 1년으로 설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라. 대한법무사협회

###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귀 위원회의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기획운영과-148, 2017. 1. 11.)관련입니다.
- ▶ 우리협회는 위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 유가증권관련 등 위반 범죄 관련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단, 부수범위반의 경우 어떤 인자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집행유예만 규정되어 있어 그 부분이 적절한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특별한 의견 없음

### 나. 법무부

#### ○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양형기준(제정)

- 설정대상 및 유형분류
  - ▶ (설정대상)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 제한 이자율 등 초과, 채권추심법의 폭행협박에 의한 채권추심 등
  - ▶ (유형분류)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등 2가지 유형
- 형량범위
  - 대부업법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3년↓)	-6월	4월-10월	8월-2년

2	무등록 등(5년↓)	-10월	6월-1년6월	1년-4년
---	------------	------	---------	-------

-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야간 방문, 전화 등(3년↓)	-6월	4월-10월	6월-2년
2	폭행·협박 등(5년↓)	-8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 ▶ 통계상 실행 선고된 대부업법위반 사건 가운데 징역 6월 이상이 선고된 사건의 비율이 90%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업법위반에 관한 기본영역의 하한이 다소 낮음
- ▶ 채권추심법위반의 경우, 반복적·야간방문, 전화 등 행위 유형은 감경구간의 상한이 가중구간의 하한과 중첩되어 각 영역 구별이 무색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특별한 의견 없음

다.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

-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약칭)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처벌규정은 이자율제한위반(법제19조2항 3호)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미등록대부업은 제19조 1항 1호 위반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처단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4월부터 10월의 구간이며, 감경영역은 8월이 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8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규정 가운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범법행위는 반복적인 야간추심 등(제15조 2항 2호)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폭행·협박 등의 행위(제15조 1항)위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보면 반복적 또는 야간방문 등의 죄에 대해서는 처단형의 기본영역을 징역4월-10월로 정하

고 감경영역은 6월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6월-2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폭행·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처단형의 기본영역을 징역6월-1년 6월로 정한 후 감경영역은 8월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징역 10월-징역3년 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위반의 경우 이자율제한위반죄의 법정형과 미등록대부업의 법정형을 비교하였을 때 미등록대부업의 처단형의 기본영역 하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하한선을 징역 6월에서 징역 8월 정도로 설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채권추심법상 법정형의 장단기와 서민경제에 대한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비교하였을 때 폭행·협박 등 행위에 대한 처단형의 기본영역 하한선이 너무 단기형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하한선의 양형을 징역6월에서 8월 내지 10월로 상향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 최종유형분류

-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최종유형분류는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대부업법위반의 미등록대부업의 기본영역의 하한선을 징역6월에서 징역 8월로 상향조정하고, 채권추심법에서 폭행·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본영역의 하한선을 징역6월에서 징역8월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라. 대한법무사협회

####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귀 위원회의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기획운영과-149, 2017. 1. 11.)관련입니다.
- ▶ 우리협회는 위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 대부업법위반 범죄 관련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수정안에서 양형기준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보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 예컨대, 종래 산업비밀보호법상 국외침해행위의 양형기준(기본영역)은 '1년 ~ 3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양형기준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보게 되어 양형기준(가중영역)이 '2년 ~ 6년'이 됨 → 법정형 상향 정도에 비하여 양형기준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으로 보임
- ▶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경우(영업비밀 중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있음)와 마찬가지로 산업비밀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에 관한 범행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보는 방안, 또는 ② 특별가중인자에서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삭제하고 상향조정된 양형기준 형량범위 내에서 법정형 상향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법무부

#### ○ 지식재산권 범죄군 양형기준(개정)

- 양형기준 수정사항
  - 형량범위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b>2년</b>	1년 - 3년 <b>4년</b>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3년 <b>3년6월</b>	2년 - 5년 <b>6년</b>

- 특별가중인자 추가

-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 국가 지정·고시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집행유예 선고 기준 추가
  -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행’ 및 위 추가한 특별가중인자 2개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
- 검토의견
  - 유형분류 관련
    - ▶ 위 유형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 그러나 종전에 위 각 침해행위의 법정형이 같았으나(국외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국내침해 5년 이하의 징역),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국외침해 15년 이하의 징역, 국내침해 7년 이하의 징역)되었음
    - ▶ 양형기준 수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양형인자 추가만으로는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불충분함
    - ▶ 따라서 유형자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형량범위 관련
    -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수정안은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각 상한의 상향에만 그침
    - ▶ 더구나 상향의 폭도 법정형의 상향 폭에 비추어 비교적 낮은 수준임
    - ▶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자의 의사는 기존의 법원의 낮은 선고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임에도 기본영역·가중영역의 각 상한만을 상향한 수정안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 한편,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각 상한만을 상향시킴으로써 법정형을 상향 조정할 취지와 재판 과정에서의 규범력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각 영역의 폭이 넓어져 법원의 양형 재량을 지나치게 넓히고 이로 인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 따라서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각 하한의 상향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개정 취지에 맞게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

- ▶ 특별한 의견 없음

## 다. 산업통상자원부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I.형종 및 형량의 기준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1 국내침해 가중 : <u>1년 - 4년</u> 유형2 국외침해 가중 : <u>2년 - 6년</u> 감경요소 : <u>형사처벌 전력 없음</u>  II.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 <u>형사처벌 전력 없음</u>	I.형종 및 형량의 기준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1 국내침해 가중 : <u>2년 - 6년</u> 유형2 국외침해 가중 : <u>3년 - 10년</u> 감경요소 : <u>형사처벌 전력 없음</u>  II.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 <u>형사처벌 전력 없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해외 기술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li> <li>*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 현황(국정원) : ('12) 30건 → ('15) 51건</li> <li>-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유출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산업기반 붕괴 위험이 있음</li> <li>○ 반면, 양형기준 개정안은 국내주요 경제범죄 양형기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아울러, 기술유출 사범의 경우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붙임자료 참조
--	--	-----------

○ 참고1 : <산업기술 유출현황>

- (건수) 첨단기술 해외유출 건수가 최근 지속적 증가 추세 ('10년 41 →'15년 51)

< 첨단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

구 분	'10	'11	'12	'13	'14	'15
첨단기술	41	46	30	49	63	51

<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경찰청) >

구 분	'10	'11	'12	'13	'14	'15
총 계(건)	40	84	140	97	111	98
국내유출(건)	35	74	121	81	99	86
해외유출(건)	5	10	19	16	12	12

- (분야) 과거 대기업· IT 분야 중심에서 최근 중소기업·정밀기계까지 확대

\* 유출대상은 중소기업 64%, 대기업 16%, 기타 공공연구기관 등이 20% 차지

< 업종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15년, 229건, 국정원)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25.7	12.5	32.8	3.6	6.1	19.3	100%

- (경로)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인력에 의한 유출이 약 80% 차지

\* 기술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78%), 인사·처우 불만(13%) 등

< '10~'15년도 해외유출 적발 시행주체별 현황 (국정원)>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기 타	계
51.1	27.1	6.4	0.4	15	100%

## 최근 산업기술 유출 주요사례

◇ (사례1)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前직원 등이 범퍼도면 등 설계도면 200여건 불법유출하여 중업체가 발주한 신차 개발에 활용 및 중국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한 혐의로 구속('15. 7)

\* 유출도면이 중국신차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3년간 영업상 피해액 700억원대 추산

◇ (사례2) 현대중공업은 힘센엔진\*의 유사부품이 국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15.8), 기술유출 사범 불구속입건('16.6)

\* 4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선박용 엔진(총 9,000여대 생산, 40여개국 수출)

### ○ 참고2 :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 국내의 주요 경제범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 < 횡령·배임범죄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1억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5년 이하,
2	1억 이상~5억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10년 이하
3	5억 이상~50억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3년 이상
4	50억 이상~300억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무기 또는
5	300억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5년 이상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 특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증권범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1억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10년 이하
2	1억 이상~5억 미만	1-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3	5억 이상~50억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년 이상
4	50억 이상~300억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무기 또는
5	300억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5년 이상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1천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5년 이하
2	1천만원~3천만원	8월~2년	1년~3년	2년~4년	
3	3천만원~5천만원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년 이상
4	5천만원~1억원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7년 이상
5	1억원~5억원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무기 또는 10년 이상
6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 특가법 제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 제5조 제4항

- 수수액 3천만원~5천만원 : 5년 이상, 5천만원~1억원 : 7년 이상, 1억이상 :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기술침해범죄 법정형 비교

구분	한 국	미 국	일 본
적용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영비법)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산기법)	경제스파이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 영비법 : (국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기법 : (국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국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	· 국외 : (개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 벌금 (법인) 1천만불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불 이하 벌금 (법인) 500만불 이하 벌금	· 국외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10억엔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5억엔 이하 벌금

▪ 국내와 미국의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실제 양형 비교

< 영업비밀·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현황 (출처 : 대법원) >

년도	유기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계
2014	24명	41명	34명	2명	18명	122명
2013	7명	31명	30명	4명	20명	94명
2012	18명	51명	46명	2명	36명	155명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피고인 양형('96~'12) (출처: 법제연구원) >

양형	피고인 수(해외유출)	피고인 수(국내유출)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0	27
자택연금	0	4
0~6개월 징역	1	7
6~18개월 징역	0	13
19~36개월 징역	1	17
37~54개월 징역	0	5
55~95개월 징역	1	6
96개월 이상 징역	1(188개월)	1(96개월)

라. 대한변호사협회

○ 검토의견

-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2017. 1. 4. 제77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수정한 내용은 ①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 ②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위 양형기준은 기존에 설정된 양형기준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위에서 적시한 일부 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한 것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수정한 양형기준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2016. 6. 30.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소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 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형기준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위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더 높이고 이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양형기준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최종유형분류

-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한 양형기준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대한법무사협회**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귀 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기획운영과-150, 2017. 1. 11.)관련입니다.
- ▶ 우리협회는 위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지적재산권 등 위반 범죄 관련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

**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검토 의견

- 산업기술 유출 범죄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 등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17.1월 의결) 강화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 산업기술 유출·침해관련 범죄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하여 지난 '17.1월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 개정안 보다 강화한 양형기준안 마련이 필요
- ▶ 그간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첨단기술의 국내, 해외유출에 따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또한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침해 기법도 다양화 및 지능화 추세

\* 특히, 기술침해는 70%이상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시도되고 아울러 주변국의 국가적 자원의 첨단기술력 강화 전략에 따른 전문·숙련인력의 비정상적 이동에 의한 침해도 빈발

\* 연도별 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경찰청)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14년	15년
건 수	40	84	140	97	111	98

\* 첨단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 수	41	46	30	49	63	51

\* 유형별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국정원)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기 타	계
52.8%	27.1%	7%	0.4%	12.7%	100%

\* 국가별 유출 건수( '10 ~ ' 14년, 경찰청)

중국	일본	미국	대만	기타	계
54%	12.7%	9.5%	8%	15.8%	100%

○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 (2017.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산기법)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7년 이하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15년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 국내침해 7년 이하 징역, 해외침해 15년 이하 징역

< 양형기준 개정 내용 >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조직적 범행</li> <li>·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li> <li>·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 비밀에 관한 범행</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li> </ul>
일반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li> <li>· 피해규모가 큰 경우</li> </ul>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li> <li>·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 집행유예기준 개정 내용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조직적 범행</li> <li>·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li> <li>·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li> <li>· <u>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u></li> <li>· <u>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u></li> <li>· <u>피해 미변제</u></li> <li>·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li> <li>· 비영리 목적의 범행·자수</li> <li>·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li> <li>· 피해규모가 큰 경우</li> <li>·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생계형 범죄</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li> <li>· 피고인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양형기준 개정안의 적정성 검토

- 양형기준 개정안의 경우 현행 국내 주요 경제범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및 해외 양형\* 대비 아직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양형의 강화와 아울러 양형기준 감경요소의 대폭 축소(예시: 형사처벌 전력없음)와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요소(예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축소가 병행하여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관련 양형기준을 2~4단계까지 강화,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 (지식재산연구원)

\*\* 2012~2014년까지 영업비밀·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선고현황은 선고건수 가운데 13%만 징역형으로 선고, 미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대법원)

▪ **국내의 주요 경제범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 횡령·배임범죄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1억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5년 이하,
2	1억 이상~5억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10년 이하
3	5억 이상~50억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3년 이상
4	50억 이상~300억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무기 또는
5	300억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5년 이상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1천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5년 이하
2	1천만원~3천만원	8월~2년	1년~3년	2년~4년	
3	3천만원~5천만원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년 이상
4	5천만원~1억원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7년 이상
5	1억원~5억원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무기 또는 10년 이상
6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수재 등의 죄)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및 동법 제5조 제4항

: 수수액 3천만원~5천만원 : 5년 이상, 5천만원~1억원 : 7년 이상, 1억이상 :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기술침해범죄 법정형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적용법률	· 산업기술보호법 · 영업비밀보호법	경제스파이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 산기법: (국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국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 국외: (개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 벌금 (법인) 1천만불 이하 벌금	· 국외: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10억엔

5억원 이하 벌금 · 영비법 : (국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불 이하 벌금 (법인) 500만불 이하 벌금	이하 벌금 · 국내 :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5억엔 이하 벌금
--	--	--

▪ 국내와 미국의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실제 양형 비교

< 영업비밀·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현황(대법원) >

년도	유기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계
2014	24명	41명	34명	2명	18명	122명
2013	7명	31명	30명	4명	20명	94명
2012	18명	51명	46명	2명	36명	155명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피고인 양형('96~'12) (법제연구원) >

양형	피고인 수(해외유출)	피고인 수(국내유출)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0	27
자택연금	0	4
0~6개월 징역	1	7
6~18개월 징역	0	13
19~36개월 징역	1	17
37~54개월 징역	0	5
55~95개월 징역	1	6
96개월 이상 징역	1(188개월)	1(96개월)

## VIII.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2017. 4. 10. 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범죄	관보게재의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 5. 초순	2017. 7. 초순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2017. 5. 초순	2017. 5. 중순

## IX.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6. 12. 1.	○ 일반적 양형기준이 작량감경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 법정형의 2분의 1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강도상해치상범죄의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2분의 1인 3년 6월부터가 아닌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내용
2	2016. 12. 22.	○ 게시자는 '죄'의 본질과 그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양형기준과 절차에 대한 소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다면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국민으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양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
3	2017. 1. 1.	○ 부산변협에서 발표한 2016년 법관 평가 기사를 보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자료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지 법원이 참고해야 할 자료는 아니며, 법관에 대한 진정한 평가 자료는 소송 당사자들과 법관의 가장 가까이에서 재판을 돕는 직원들의 의견일 것이라 주장하며, 게시자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으며 겪은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며 훌륭한 판사님들을 만났고 판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되었다는 내용

4	2017. 1. 7.	○ 우리나라 교통범죄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5	2017. 1. 31.	○ 우리나라 현재의 양형기준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피의자 우선주의적인 것일 뿐이므로 현행 양형기준보다 10배 내지는 100배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준엄함을 통한 법치민주국가를 제대로 확립하여야 한다는 내용
6	2017. 2. 2.	○ 불법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게시자로,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연쇄 경제살인행위로 연쇄살인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7	2017. 2. 10.	○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중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성범죄에 있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엄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형법에는 필수감경, 임의감경, 작량감경 사유가 존재하므로, 법정형 하한의 4분의 1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도상해, 치상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다양하여 이에 따라 형량이 다양하게 선고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현재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적용 범위, 효력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양형기준 코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육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개별 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선량한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우리나라 현재의 양형기준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피의자 우선 주의적인 것일 뿐이므로 현행 양형기준보다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성범죄에 있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엄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하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함(형사소송법 제463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7. 1. 4.	○ 2016년 11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요청했던 대구구치소 수감자로, 사기사건에 있어서 범죄의 내용이 같고 피해금액이 다른 두 명의 재소자의 예에 있어서 피해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징역 1년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묻는 내용
2	2017. 2. 9.	○ 양형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련된 내용의 책이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3	2017. 3. 1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흥기 등 폭행)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민원인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집단, 흥기 등 폭행)의 위헌에 관한 정보, 위헌 판결 후 변경된 조항, 변경된 양형기준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

###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발간한 「2016 양형기

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하여 위헌에 관한 정보, 위헌 판결 후 변경된 조항에 관한 정보>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양형기준은 별첨 자료와 같고, 현재까지 수정된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별지]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전 휴 재 (全 然 在)
	생년월일	1974년 12월 15일생
	출생지	서울
	직 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연 락 처	02-530-2305 / 010-2215-2956
<b>학 력</b>		
○ 1993.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9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b>주 요 경 력</b>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2002.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 2007. 대구지법 의성지원 판사		
○ 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4.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구 민 경 (具 珉 莛)
	생년월일	1976년 2월 5일생
	출생지	경남 창녕
	직 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연 락 처	02-530-2305 / 010-2215-2956
<b>학 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졸업</li> <li>○ 200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li> </ul>		
<b>주 요 경 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li> <li>○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li> <li>○ 2004. 수원지방법원 판사</li> <li>○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li> <li>○ 2008. 부산지방법원 판사</li> <li>○ 2013. 인천지방법원 판사</li> <li>○ 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li> <li style="padding-left: 40px;">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li> <li>○ 2017.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li> </ul>		

##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김도연 (金度延)
	생년월일	1978년 1월 3일생
	출생지	서울
	직 업	대검찰청 연구관
	연 락 처	02-3480-2000 / 010-9823-0117
<b>학 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구정고등학교 졸업</li> <li>○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li> <li>○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li> </ul>		
<b>주 요 경 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li> <li>○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li> <li>○ 2005.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 검사</li> <li>○ 2010. 광주지방법검찰청 목포지청 검사</li> <li>○ 2014.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li> <li>○ 2016. 대검찰청 검찰연구관</li> </ul>		